

효성중공업 사무기술직 노동조합 규약

2026. 5. 31. 제정

효성중공업 사무기술직 노동조합

목 차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제1조(명칭) 1</p> <p>제2조(목적) 1</p> <p>제3조(사업) 1</p> <p>제4조(주된 사무소) 1</p> <p>제5조(법인) 2</p> <p>제6조(연합단체) 2</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조직</p> <p>제7조(구성) 2</p> <p>제8조(가입 및 탈퇴) 2</p> <p>제9조(조합원 자격상실) 3</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권리와 의무</p> <p>제10조(조합원의 권리) 3</p> <p>제11조(조합원의 의무) 4</p> <p>제12조(조합비) 4</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기관 및 회의</p> <p>제13조(총회의 구성 및 소집) 5</p> <p>제14조(대의원회의 구성 및 소집) ... 5</p> <p>제15조(집행위원회 구성 및 소집) ... 5</p>	<p>제17조(대의원회의 기능) 6</p> <p>제18조(집행위원회의 기능) 7</p> <p>제19조(회의의 성립 및 진행 등) ... 7</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임원</p> <p>제20조(임원) 7</p> <p>제21조(임원의 임무와 권한) 7</p> <p>제22조(임원의 임기) 8</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선거</p> <p>제23조(임원 선거) 8</p> <p>제24조(대의원 선거) 9</p> <p>제25조(선거관리위원회) 9</p> <p>제26조(선거결과에 대한 이익) 10</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재정 및 회계</p> <p>제27조(재정) 10</p> <p>제28조(조합비의 결정 및 변경) ... 10</p> <p>제28조의2(임원의 직책수당) 10</p> <p>제29조(회계) 10</p> <p>제30조(운영상황 열람요구 등) 11</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감사</p>
---	--

<p>제31조(감사) 11</p> <p>제32조(회계감사) 12</p> <p style="text-align: center;">제9장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p> <p>제33조(단체교섭) 12</p> <p>제34조(쟁의행위의 결의) 13</p> <p>제35조(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등) 13</p> <p style="text-align: center;">제10장 포상 및 징계</p> <p>제36조(포상) 14</p> <p>제37조(임원의 탄핵) 14</p> <p>제38조(징계) 14</p> <p>제39조(징계의 의결 및 재심) 15</p> <p style="text-align: center;">제11장 해산</p> <p>제40조(해산사유) 15</p> <p>제41조(청산) 16</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1조(시행일) 15</p> <p>제2조(경과조치) 16</p> <p>제3조(통상관례) 16</p>	
---	--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노동조합은 효성중공업 사무기술사무직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약칭함)이라 한다. 영문표기는 "Hyosung Heavy Industries Office & Technical Workers' Union(HHI-OTWU)"로 한다.

제2조 (목적)

본 조합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노동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조합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헌법 제33조 제1항의 노동3권의 확립
2. 조합원의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의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6. 조합의 조직 확대 및 강화에 관한 사항
7. 노사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생과 발전에 관한 사항
8. 실질임금의 향상과 공정한 소득배분에 관한 사항
9. 기술 및 교육수준의 향상에 관한 사항
10. 조합의 재정자립에 관한 사항
11. 조합원의 작업환경개선 및 산업재해의 예방에 관한 사항
12. 기타 상기 각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주된 사무소)

- ① 본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창원1공장(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 171, 내동)에 둔다.
- ② 조합은 필요 시 지부·분회 또는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설치·이전은 집행기구의 결의로 정한다.

제5조 (법인)

본 조합은 필요에 따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연합단체)

본 조합은 필요에 따라 상급단체인 연합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2장 조 직

제7조 (구성)

본 조합은 효성중공업(주)에 근무하는 기술사무직 노동자로서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 사용자, 이익대표자,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8조 (가입 및 탈퇴)

- ① 본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소정의 가입원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의 최종 승인에 따라 가입원서가 제출된 때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② 위원장은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가입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가입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는 본 조합에 이중가입을 할 수 없다.
- ④ 본 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소정의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탈퇴서가 제출된 때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조합의 내부통제권에 따라 징계절차 진행 중인 조합원은 징계절차가 끝난 이후에 탈퇴할 수 있다.

- ⑤ 본 조합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거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조합을 탈퇴한 자가 본 조합에 재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6개월의 기간 경과 후 재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 (조합원 자격상실)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퇴직한 때
2. 비조합원의 범위에 해당되었을 때
3. 제명된 때
4.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에 해당한 때
5. 사망한 때
6.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비를 미납한 경우(6개월 이상)
7. 조합원 탈퇴서를 제출한 때

제3장 권리와 의무

제10조 (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이 3회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호의 권리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임원의 불신임권
3. 총회 시 발언권 및 의결권

4. 본 조합에 건의할 수 있는 권리
5. 조합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6. 조합의 시설 및 조합에서 획득한 이익이나 복지 후생사업의 이익 혜택을 균등하게 이용할 권리
7. 조합의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권리

제11조 (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규약 및 제 규정 준수 의무
2. 의결기관의 결의 준수 의무
3. 기타 조합의 결정사항과 지시, 명령에 복종하며 조직의 통제에 따를 의무
4. 조합활동에 협력하고 기밀을 유지할 의무
5. 규약 및 총회(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조합비 등의 납부
6. 조합이 쟁취한 권리 수호의 의무

제12조 (조합비)

- ① 최초 가입 시 입회금(가입비)은 3만 원으로 하고, 조합비는 가입한 달로부터 전 조합원에게 공통 적용하되 PM직급 이상의 경우 정액 5만 원, 그 외 조합원의 경우 정액 3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단체협약의 체결에 따라 조합비 납부에 관한 단체협약 내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조합비공제제도(Check-off)를 실시한다.
- ② 조합비는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임금 지급일로부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임금 지급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4장 기관 및 회의

제13조 (총회의 구성 및 소집)

- ①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연기할 수 있다.
- ③ 정기총회의 경우 필요에 따라 정기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 ④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소집공고는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
 3. 대의원회에서 총회 소집을 의결한 때
- 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과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해 행정관청이 지명한 소집권자가 회의소집을 요청했을 때

제14조 (대의원회의 구성 및 소집)

- ①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는 본사와 공장별로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노동조합 위원장이 대의원회 위원장이 된다.
- ②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총회로 갈음할 수 있다.
- ③ 임시대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소집공고는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
 3. 집행위원회에서 대의원회의 소집을 의결한 때

- ④ 대의원회 소집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회의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5조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

- ① 집행위원회는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임원으로 구성하며, 노동조합 위원장이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또한 집행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집행위원회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부의안건을 집행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총회의 기능)

- ① 규약과 제 규정의 해석에 대해 총회와 대의원회의 해석이 상이한 경우 총회가 우선적으로 해석 권한을 갖는다.
- ②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규약의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
 -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 3.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5.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 6.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 7. 조직형태의 변경·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 8.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 (대의원회의 기능)

대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에 관한 사항
- 2.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3.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 4.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 5. 자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조합원 징계 재심에 관한 사항
7. 징계 조합원의 사면·복권에 관한 사항
8. 조합비에 관한 사항
9. 선거관리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위법·부당한 업무집행에 대한 일시정지 결정에 관한 사항
11. 기타 주요안건에 관한 사항

제18조 (집행위원회의 기능)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추진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2. 규약 및 규정 해석에 관한 사항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의 복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대의원회의 수임 사항
6. 총회, 대의원회 준비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실행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당면한 현안에 관한 사항

제19조 (회의의 성립 및 진행 등)

① 조합의 모든 회의는 재적 조합원·대의원·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조합원·대의원·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출석 조합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3.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전항 제1호 및 제2호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의결한다.

제5장 임원

제20조 (임원)

조합에 다음의 임원을 두며, 조합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임원을 가감하여 조직에 변화를 줄 수 있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3명 이내
3. 사무처장 1명
4. 선거관리위원장 1명
5. 대외협력국장 1명
6. 교육부장 1명

제21조 (임원의 임무와 권한)

임원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으며, 서로 겸직할 수 없다.

1. 위원장
 - 가. 조합을 대표하고 노동조합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 나. 총회, 대의원회,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다.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 라. 사무국 직원의 임면권을 갖는다.
2. 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사무국장
 - 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일상 업무를 집행하고, 사무국을 총괄한다.
 - 나. 조합의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현금, 자산을 관리한다.
 - 다. 각종 회의를 준비한다.
 - 라. 사무국 직원의 임면을 제청한다.
 - 마.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4. 선거관리위원장

- 가. 선거관리에 필요한 선거관리위원의 임면권을 갖는다.
 - 나. 위원장 및 대의원 선거 등 선거관리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선거 관련 제한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한다.
 - 다.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절차에 대해 총괄한다.
5. 대외협력국장
- 가. 조합의 원활한 운영 및 대외 활동에 필요한 각종 사항에 대해 관리한다.
 - 나. 재정관리, 조합과 관련된 전반적 비용의 수납과 지출, 자산 관리, 회계감사에 응대한다.

제22조 (임원의 임기)

- ① 최초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다음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그 이후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다음날로부터 전임자의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6장 선 거

제23조 (임원 선거)

- ①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단 조합규약에 의거 징계를 받은 자는 임원 입후보에 대한 자격에 제한될 수 있다.
- ② 임원에 입후보하는 자는 조합원 1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조합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 ③ 위원장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상위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다수 득표자로 선출한다.

- ④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추천된 후보에 대해 총회의 찬반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이 유고되어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시 직무대행자는 유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 ⑥ 임기만료에 따른 차기 임원의 선거는 임기만료일 60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에 실시하여야 한다.
- ⑦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 실시하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 (대의원 선거)

- ①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20인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 ②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만료에 따른 차기 대의원 선거는 임기만료일 60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에 실시한다.
- ③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 실시하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 (선거관리위원회)

- ① 조합은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5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있기 3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발족과 선거관리 규정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사안에 따라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에서 일어나는 선거에 관한 모든 절차를 주관하며, 선거의 공정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제26조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

-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자 공고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입후보자나 조합원은 당선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에 대한 당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결정하면, 선거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이의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27조 (재정)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들이 납부하는 조합비와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8조 (조합비의 결정 및 변경)

조합비의 종류·금액·납부방법 및 변경은 총회(또는 대의원회) 의결로 정한다. 다만, 설립 초기 조합비는 제12조에 따른다.”

제28조의2(임원의 직책수당)

- ① 임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직책수당을 지급한다.
 1. 위원장 : 월 200만원
 2. 부위원장 : 월 150만원
 3. 사무국장 : 월 100만원
- ② 그 외 임원의 직책수당은 총회(대의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29조 (회계)

-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눈다.
- ②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③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 등 회계의 일체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회계보고서를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④ 공표는 노동조합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한다.
- ⑤ 기타 회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30조 (운영상황 열람요구 등)

- ① 위원장은 조합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이 열람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해당 조합원은 전항의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감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감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에 대한 당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은 감사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조합원에게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8장 감 사

제31조 (감사)

- ① 감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 ② 최초로 선출되는 감사의 임기는 선출된 다음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그 이후의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감사의 임기는 선출된 다음날

로부터 전임자의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 ③ 감사는 감사결과에 대해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진술할 수 있다.
- ④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⑤ 조합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다수의 감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⑥ 감사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운영규정」에 따른다.

제32조 (회계감사)

- ① 감사는 조합의 재원 및 용도, 주요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6개월마다 1회씩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도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④ 감사는 조합 회계 규모가 일정 수준에 있거나 조합원 2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등 외부 회계전문가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9장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

제33조 (단체교섭)

- ① 조합의 위원장은 각 지부의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권을 갖는다.
- ② 위원장은 단체교섭 시 교섭전략 수립 및 교섭력 강화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의 일부 권한을 자문노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사용자와 원활하게 교섭하기 위하여 자문 공인노무사를 포함하여 5인의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34조 (쟁의행위의 결의)

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등)

- ① 위원장은 쟁의행위 찬반투표일 7일 전까지 노동조합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각각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목적, 방법 등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쟁의행위 찬반투표 완료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찬반투표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조합원은 투표결과 공고 후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에 대한 당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결정하면, 쟁의행위를 중지하고, 찬반투표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 ⑥ 위원장은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를 쟁의행위 종료 후 1년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조합원이 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한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⑦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0장 포상 및 징계

제36조 (포상)

조합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집행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의원회의의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제37조 (임원의 탄핵)

- ① 임원의 행위가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임원은 탄핵될 수 있다.
- ② 탄핵안을 부의안건으로 하여 총회의 소집공고가 된 날로부터 해당 임원의 권한은 정지된다.
- ③ 총회는 해당 임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④ 탄핵안이 가결된 경우 해당 임원은 그때로부터 3년간 임원에 입후보할 수 없으며, 부결된 경우 그 즉시 권한이 회복된다.

제38조 (징계)

- 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행위원회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1. 규약 및 제 규정을 위반한 때
 2. 정당한 결의·지시사항을 위반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개인적 주관으로 조합 또는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한 때
 5. 조합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 방해 행위를 한 때
 6. 조합비 및 기금 등 횡령·착복·유용했을 때
 7. 조합 또는 지부의 기물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괴·파손했을 때
- ② 징계의 종류는 그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경고 : 구두 또는 서면 경고
 2. 정권 : 경중에 따라 1월 이상 6월 이하 권리정지
 3. 제명

제39조 (징계의 의결 및 재심)

- ① 집행위원회는 징계대상 조합원에 대하여 징계심의회 개최 7일 전 까지 징계사유 등을 문서로써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대의위원회가 징계가 부당하다고 의결한 때에는 징계처분은 그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 ③ 징계가 확정되어 1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에는 대의위원회의 의결로써 사면·복권할 수 있다.

제11장 해 산

제40조 (해산사유)

조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산한다.

1. 회사가 폐업한 때
2. 그 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제41조 (청산)

- ① 조합이 제40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해 해산된 경우에는 총회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내의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및 자산의 청산안을 작성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청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 이 규약 제정 당시의 조합원은 이 규약에 의한 조합원으로 본다.
- ② 이 규약 제정 당시 설립총회에서 선출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임시임원으로서 조합의 설립신고 및 설립 초기 운영을 수행한다.
- ③ 임시임원의 임기는 설립신고증 교부 후 최초 정기총회에서 정식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로 하되 최초 정기총회는 설립신고증 교부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개최한다.”

제3조(통상관례)

본 규약에 미비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